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전 문 위 원 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3. 10. 11.

나. 회부일자 : '93. 10. 11.

3. 제안이유

- 물가안정대책 총괄 조정기능강화 및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도모

4. 주요골자

○ 기 능

- .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상.하수도료,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등)

○ 위원회 구성

- . 대책위원회 : 15인이상 25인이하 (위원장 : 도지사)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 성 : 충청북도의 물가관련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물가관련기관.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 실무위원회 : 10인이내 (위원장 : 부지사)
 - 구 성 :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

○ 회 의 : 정기(분기 1회) 및 수시개최

5. 검토보고

[보고자 전문위원 안 창 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항으로
관여할수 있는 상.하수도공공요금, 교통요금, 의료원 수가등에 대하여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한바

지역단위 물가대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강화코져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
사항을 조정 통제하는 한편,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계획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지방
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도모하여 물가안정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